

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60일
신청인	상호(명칭)	대표자(성명)	
	주소 (전화번호:)		
신청 내용	협약 분야		
	협약 기간		

「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지방해양수산청장
특별시장·광역시장
·도지사 또는
특별자치도지사
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「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등록증 2. 인력현황 및 시설·장비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. 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4. 그 밖에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	--	-----------

처리절차						
신청서 작성	➔	접 수	➔	검 토	➔	선정 및 체결
신청인		처리기관: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				